



제428 회국회(임시회)
제1 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건의료인력 적정 인력기준 등〉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092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5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7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28인

(2) 제 안 일 : 2025. 6. 26.

(3) 회 부 일 : 2025. 6.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협, 과중한 업무 부담, 교대근무 여건 악화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인력 기준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수와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 사업 수행자 선정 등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관 실태조사의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제33조의3 및 제36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적정 인력 기준을 정할 때의 고려 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적정 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그 이행여부를 실태조사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제33조의3 및 제36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6(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 인력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유형별 적정 환자 수를 정한다. 또한, 교대 근무인력의 경우 근무조별 실제 근무인력 대비 환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 인력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 지원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 사업 수행자 선정 등

제33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②·③ (생략)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4. (생략)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 또는 차등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실태조사) ① -----

-----의료기관의 실태와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준수사항)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3조의6에 따른 의료기관 종류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에

6. ~ 14. (생략)	<u>관한 사항</u> 6. ~ 14.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가.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등

□ 현행법 제36조제5호¹⁾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정원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²⁾ 및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력의 정원 기준에 따르면 의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로, 간호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로 규정하고 있음.

1)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2)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 의사, 간호사 정원 기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자료) >

- **의사 정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치과의사, 한의사 정원** : 의사의 경우와 같음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
- **간호사 정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조산사 정원** :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

- (참고) 의료인력 산정 예시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 외래환자 90명을 진료하는 종합병원의 의사, 간호사 정원

① 의사(4명) : 입원환자 $[40 \div 20]$ + 외래환자 $[(90 \div 3) \div 20]$

= 3.5명(소수점을 올려 의사 4명이 필요함)

② 간호사(19명) : 입원환자 $[40 \div 2.5]$ + 외래환자 $[(90 \div 12) \div 2.5] = 19$ 명

-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3)에서는 의료인 외의 인력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경우 [별표 5의2]에서 정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영양사의 경우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기준을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음.

3)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1.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별표 5의2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3.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4.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둔다.
5.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7.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의2) >

의료기관 종류		약사 정원
상급종합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300병상 미만	1인 이상의 약사
	병원	1인 이상의 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다.
치과병원(30병상 이상에 한정한다)		1인 이상의 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다.
한방병원		1인 이상의 한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한약사를 둘 수 있다.
요양병원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

비고: 약사 수의 산정 시 그 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하고, 1 이상인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한다.

□ 참고로 현행법령상 의사와 간호사의 정원 기준은 1973년 「의료법」 전부개정⁴⁾을 통해 도입되면서 정해진 이후 52년간 그 비율이 유지되고 있음.

□ 개정안은 법률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수와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4) 「의료법」 [시행 1973. 8. 17.]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제32조 (시설기준등)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기준·규격·의료인의 정원 기타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 1973. 9. 20.] [대통령령 제6863호, 1973. 9. 20., 전부개정] 제24조 (의료인등의 정원)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1일 평균 입원환자 20인에 대하여 1인 또는 외래환자 50인에 대하여 1인의 비율로 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2. 조산원은 산부인과를 둔 의료기관에 두되, 그 정원은 제3호의 간호원정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3. 간호원은 1일 평균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 또는 외래환자 30인에 대하여 1인의 비율로 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확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의료기관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인센티브 및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또한, 현행 제36조제5호에서는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 제3조의6에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5)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외에도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두는 인력 중 의료인 외에 간호조무사 등 타 보건의료인력에 관해서도 정부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아울러 개정안은 제3조의6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 인력 기준을 정할 때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유형별 적정 환자수를 정하도록 하고, 교대 근무인력의 경우 근무조별 실제 근무인력 대비 환자 비율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환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현행법령에서 의료인 등에 관한 정원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당수(30% 이상)의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정원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017년~2021년 4월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법적 정원 미준수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4
상급종합	-	-	-	-	-
종합병원	66 (21.9)	65 (20.9)	47 (15.0)	42 (13.2)	37 (11.6)
병원	985 (67.2)	1,025 (70.0)	918 (61.7)	836 (55.2)	878 (53.3)
한방병원	156 (50.0)	174 (56.7)	179 (50.9)	244 (59.5)	262 (58.5)
요양병원*	447 (29.2)	362 (23.2)	351 (22.3)	61 (3.9)	12 (0.8)
전체	1,654 (45.3)	1,626 (44.1)	1,495 (39.6)	1,183 (30.6)	1,189 (30.3)

주)요양병원은 환자/간호사 및 간호사/간호조무사 비율을 모두 충족한 경우 “준수”로 분석

()안 비율은 해당 종별 전체의료기관 대비 미준수기관비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선우의원실 재정리

□ 또한, 현재 간호사의 경우 약 73%가 3교대 형태로 근무하고⁶⁾, 대부분 간호사 개인별로 교대하는 교번제 형태로 운영되어 긴급 결원으로 인한 근무조 변경이 잦은 실정임. 수시로 변경되는 근무표와 불규칙한 근무시간은 간호사들의 주요 이직사유 또는 직무 불만족 요인으로 조사된 바 있음.⁷⁾

□ 따라서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과중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교대제로 근무하는 경우 실제 보건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단순히 연평균 환자수를 보건의료인력의 수로 나눈

6) '23년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과(보건복지부)

7) 병원간호사회 조사(2022) 결과 주요 이직사유로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가 7.3%으로 나타남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개정안은 교대 근무 인력에 대하여 근무
조별 실제 근무인력 대비 환자 비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참고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기준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
인력 직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100개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 18,000명의 직무별 업무량을
조사하였는데, 간호사의 경우 1명당 환자수는 일반병동 3교대
기준 낮 근무 8.6명, 저녁근무 10.9명, 밤근무 13.5명으로 나타난 바
있음.

< 일평균 간호사 1명당 환자수 >

구분	일반병동(3교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			중환자실		
	낮	저녁	밤	낮	저녁	밤	낮	저녁	밤
전체	8.6	10.9	13.5	6.0	7.5	9.7	2.1	2.6	2.7
상급종합	6.3	7.7	10.3	4.3	4.8	6.0	1.6	1.7	1.9
종합병원	7.7	9.7	12.1	5.7	7.0	8.6	2.4	3.1	3.2
병원	15.3	20.7	23.6	8.9	12.9	18.0	-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간호사)’, 2023, 재편집

- 다만,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배치기준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

기준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100개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 18,000명의 직무별 업무량을 조사하였으나,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량은 의료기관의 업무체계, 진료과목, 업무단위, 인력구성, 분업화, 환자특성, 계절, 날씨 등 내·외적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업무량의 측정과 자료수집 과정 등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업무량을 수량화하여 평가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회성 측정결과를 통해 배치기준을 산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음.⁸⁾

□ 또한,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였을 때 정량적인 정원 기준 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력 배치기준을 강화할 경우 수도권 및 대형 의료기관과 지역·중소의료기관 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

□ 한편, 제21대국회에서 의료인력 법적기준 준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70호, 강선우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었는데, 그 심사 과정에서⁹⁾ 법률 시행 초기 수도권·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인력 흡수로 인해 지방·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수급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러한 우려가 있으므로 근무환경, 지역별 불균형 등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논의 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발전전략 개발”, 2023.11.

9) 제382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2020. 11. 19) 회의록 참조

나.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 준수 여부 실태조사 등

- 현행법 제33조의3¹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이 확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¹¹⁾를 통해 3년 동안 공표하고 있음.¹²⁾

10) 「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명단공표 >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결과 공표

12)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법 제61조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법 제61조의2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명(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위반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24년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 결과 >

'24.12.31.기준(단위: 개소, %, 백만원)

조사기관 (A)	조사 결과					
	정당	조사거부*	보류	수사의뢰 (B)	적발률 (B/A)	적발금액
161	30	3	1	127	78.9	428,354

* 조사거부 건에 대해서는 별도 고발 조치

자료: 보건복지부

-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실태조사(행정조사) 시 「의료법」 제33조제2항 외에도 불법 개설과 관련 있는 같은 조 제8항, 제10항 및 동법 제4조제2항¹³⁾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 제3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에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상 의료기관 준수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 현행법상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제64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의료업의 정지,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정원기준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제6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정명령 없이 의료업의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13)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중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⑩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폐쇄를 명할 수 있음.¹⁴⁾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매년 1천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정원의 법적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와 같이, 현행 규정으로는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90건에 불과함.

<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위반 행정처분 현황 >

(2019.9.1.~2022.6.30. 기준, 단위: 건)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한방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계
시정 명령	1	6	25	9	27	7	1	10	86
과징금	-	-	2	-	-	1		-	3
업무 정지	-	-	-	-	-	-		1	1
계	1	6	27	9	27	8	1	11	90

자료: 보건복지부

14)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의료기관 내에 적정 의료인력의 배치는 의료의 질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기준 준수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 준수 노력을 촉구하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간호사 정원 기준을 “실제 입원환자당 근무 간호사 수”로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¹⁵⁾이 접수되었는데, 청원 이유가 개별 의료기관이 간호사 정원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수”, “외래환자 수” 및 “재직 중인 간호사 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공개된 정보가 아니며, 각각의 정보를 확정하는 시점도 불명확해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조차도 직접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하여 파악하기 전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법령 준수 여부를 알 수 없어 해당 의료기관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음.

□ 다만,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적으로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정 명령을 통해 시정이 가능한 수준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5) 청원인 : 박시영 (국민동의 수 5만명), 동 청원은 22년 5월 간호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청원의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나, 22년 5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청원 취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청원심사소위에서 1차례 더 논의되었으며, 임기만료폐기됨.

- 위반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서 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사실 행위’이면서 행정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행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제재적 성격의 행위라는 점에서 위반행위의 양태와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환자 안전, 의료 질,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 인력 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나, 법제화를 통한 의무 부과는 ▲의료현장의 인력수급 불균형, ▲선행연구·검증자료 부족, ▲사회적 합의 미비, ▲행정·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 의료법 및 건강보험 수가체계 등에서 개별 목적에 따른 인력 기준을 운영 중이므로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중복·상충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직종별 특성, 의료기관별 기능, 환자 중증도, 인력의 근무형태 등 다양한 변수를 일률적 기준으로 반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위해 충분한 사전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2) 대한의사협회 (신중검토)

- 각 의료기관의 재정문제, 인력수급, 지역 및 진료과별 특성, 의료 서비스 균형 등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였을 때 정량적인 정원 기준 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세부의견은 다음과 같음.
- 적정 인력 기준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우연한 사정으로 혜택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공정성 및 형평성에 어긋남.

- 적정 인력 기준 법제화시 보건의료인의 추가 채용이 필요한데, 이는 경영난 가중으로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중소병원 및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함.
- 같은 종별 의료기관이어도 ① 위치한 지역, ② 각 의료기관의 특화 또는 주요 분야, ③ 해당 의료인의 역량, ④ 환자 수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필요한 적정인력 구성은 차이가 있음. 각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적정 인력 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것임.
- 적정 인력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사 vs 간호사 vs 간호조무사 및 경영진 vs 노동자(노조)간의 이해충돌이 심화될 것이며, 각 직종별 고유업무에 따른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이 달라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임.

3) 대한병원협회 (반대)

- 법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인력 수급 부족, 인건비 상승, 낮은 수가제도 등으로 의료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의료인력의 적정 공급 및 수가 등 근본적 환경 개선 없이 보건의료인력 1인당 환자 유형별 적정 환자 수를 정하고 이를 의무화한다면 보건의료체계는 왜곡될 것임.
- 지역·중소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인력 배치기준 신설·상향은 수도권·대형의료기관과 지역·중소

의료기관 간의 격차를 심화시켜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 병원마다 환자 특성과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및 수요가 다르므로, 일률으로 규제해서는 안 됨. 특히 팀 단위 진료체계 기반 의료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진료 지원인력 법제화 등 직종 내·직종 간 역할 변화, 인공지능 도입 등 의료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법으로 인력 배치기준을 신설할 경우 의료현장과 괴리되어 실효성 없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4) 대한영양사협회 (찬성)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영양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본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
-------------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5.5.29.>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 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치과 의사	의사의 경우와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종합병원과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종합병원과 같음	
한의사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한방병원과 같음
조산사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	종합병원과 같음(산부인과가 있는 경우에만 됨)		종합병원과 같음(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경우)		병원과 같음		

간호사 (치과 의료기 관의 경우에 는 치 과 위생 사 또는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 자를 2.5명으로 나 눈 수(이 경우 소 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연평균 1 일 입원환 자를 5명 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 점은 올 림). 외래 환자 12명 은 입원환 자 1명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 마다 1명 을 기준으로 함(다만, 간 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 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 명은 입원환 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 병원 과 같음	종합 병원 과 같음	한방 병원 과 같음
---	--	-------------	-------------	--	---	---------------------	---------------------	---------------------